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2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김진표·안규백·진선미

한병도 · 신정훈 · 박광온

전용기 · 이장섭 · 이상민

최종윤 · 김종민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의 불법 비행을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와 함께 초경량비행장치의항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향후 안티 드론 시스템의 운용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통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금지행위) ①・② (생	제56조(금지행위)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	3
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	
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신설></u>	다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같
	은 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